



제32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심 의 안 건

1.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29호
----------	------

2025. 4. 22.(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일 : 2025. 4. 9.
- 나. 제 안 자 : 최명수 의원 등 3인
- 다. 회 부 일 : 2025. 4. 11.
- 라. 상 정 일 : 2025. 4. 22. (제32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최명수 의원
 -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이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장의 직무 수행을 강화하려는 목적임. 이를 통해 이장의 공석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보장하며, 이장의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과 직무상 비밀 유지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장의 신뢰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이장의 임무 명확화 및 강화(제1조, 제2조, 제4조)
 - “업무” 를 “임무” 로 변경
(이장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
 - 이장 임무 범위를 확대 (홍보자료 안내, 재난 예방활동 지원, 복지사업 지원을 명시)
- 이장 공석 시 주민 편익 보장(안 제3조)
 - 이장이 사퇴하거나 해임되는 경우, 이장이 공석 상태로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이장의 공백을 방지
- 전국이통장중앙회 금산지부 회의 참석수당 지급과 관련 예산 지원 항목 추가(안 제4조)
- 비밀유지 및 보안 강화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이장의 직무를 보다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이장의 사기 진작에 대한 사항(안 제7조)
 -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단체상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교육 및 워크숍 제공, 공로패 및 포상 등의 지원 등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기관의 보조자로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근거하여 「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장에 대한 사기 양양과 임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에 명확한 근거를 두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등 관계 법령 검토 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애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3명, 찬성 3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 별첨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33호
----------	------

2025. 4. 22.(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일 : 2025. 4. 10.
- 나. 제 안 자 : 금산군수
- 다. 회 부 일 : 2025. 4. 11.
- 라. 상 정 일 : 2025. 4. 22. (제32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박경용 행정복지국장
 -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5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에 따른 행정수요 감소 자치단체
기준인력 감축분 반영 및 직속기관의 소관사무 현행화

나. 주요내용

- 공무원 총 정수 감축 : 729명 → 727명 (▲2명)

【별표5】 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27(▲2명)	-				
:						
일반직 계	686(▲2명)	-				
3급	1	1	-	-	-	-
4급	5	4	-	1	-	-
5급	35	18	2	4	1	10
6급 이하	644(▲2명)	-				
전문경력관	1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5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에 따른 행정수요 감소 자치단체 기준인력 감축분을 반영하고 직속기관의 소관사무를 현행화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3명, 찬성 3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 별첨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34호
----------	------

2025. 4. 22.(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일 : 2025. 4. 10.
- 나. 제 안 자 : 금산군수
- 다. 회 부 일 : 2025. 4. 11.
- 라. 상 정 일 : 2025. 4. 22. (제32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박경용 행정복지국장
 -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금산군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조례」

→ 「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제한 대상 직급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항)
 - (기존) 4급 → (개정) 5급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한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금산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심의(안 제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금산군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사실상 체납징수 업무의 실무를 하지 않는 5급 이상 과장급에 대한 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는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그밖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4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 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3명, 찬성 3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별첨 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32호
----------	------

2025. 4. 22.(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 : 2025. 4. 10.
- 나. 제안자 : 금산군수
- 다. 회부일 : 2025. 4. 11.
- 라. 상정일 : 2025. 4. 22. (제32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손계원 기획전략국장
 -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2025. 1. 1. 시행)에 따라 변경된 행정기구 명칭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 체계를 확립하고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행정기구 명칭 반영(안 제1조~제52조)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안 제53조~제5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행정기구 명칭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 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지능정보화 기본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금산군 미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6개 조례의 일괄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3명, 찬성 3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별첨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부.